

2018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746호
- 다. 제출일자 : 2019. 5. 31.
- 라. 회부일자 : 2019.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8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98.5
2017	549,326	879,329	878,529	800		800	99.9
2016	500,319	773,756	772,556	1,200	-	1,200	99.8

○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8억 1,149만원으로 8억 4,22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2,976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97만원, 불납결손액 55만원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2,069,801	5,300					2,075,101	1,898,352	12,430	164,319 (7.9%)
2017	2,784,366	276,217	-	-	-	-	3,060,583	2,779,782	50,696	230,104 (7.5%)
2016	3,103,030	-	-	-	-	-	3,327,270	2,756,557	276,217	294,495 (8.9%)

○ 예산현액은 20억 7,510만원이며, 이 중 18억 9,83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1억 6,432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 : 품질시험소 건설자재품질시험 전산개발비 1,32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어 KOLAS용역 추진관련 사업비로 사용됨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3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서울특별시 전문지방서 전면 개정 용역' 사업 예산현액 2억원 대비 2.7%인 530만원임.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이월은 없고, 이월액 총액은 1,243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43만원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 예산현액 6억 5,692만원 대비 1.9%임.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억 6,432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7.9%에 해

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비고
2018	2,075,101	164,319	7.9%	
2017	3,060,583	230,104	7.5%	
2016	3,327,270	294,495	8.9%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 : 없음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절감 : 없음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62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52.6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7백만원
 - 그 밖의 사항들 2.4백만원
- (품질시험소) 예산절감 : 없음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1억 2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60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8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4백만원
 - 그 밖의 사항들 20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추계율(%) B/A	수납율(%) C/B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8년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103.8	98.5
2017년	549,326	879,329	878,529	800		800	159.9	99.9
2016년	500,319	773,756	772,556	1,200	-	1,200	154.7	99.8

가) 개요

-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8억 1,149만원에 8억 4,228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액은 8억 2,97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이며, 미수납액은 55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4~15)

-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B/A)이 2016년 154.7%, 2017년 160%인데 비해 금회는 103.8%로, 전회 대비 세수추계의 정확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 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9,600	12,650	12,650	3,050	공사, 공단 심의 요청 증가
과태료	34,250	41,112	36,070	6,862	위반업체 기관통보 건수 증가
품질시험소					
기타사용료	46,050	40,644	40,644	△5,405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포장 전문교육비, 주차요금수입
주차요금수입	-	6,072	6,072	6,072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25면) 주차요금 수입으로 기타사업 수입에 편성되어 예산액이 없음
불용품매각대	-	2,000	-	2,000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에 따라 노후 관용차량(2005년식) 매각처분함
그외수입	-	8,541	8,501	8,541	소액의 검사수수료에 해당되어 예산 미편성 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 과다 민원에 따른 검정 수수료 외 예측불가 세입 발생

○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표] 참조),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며 예산액 96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265만원(131%)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동 항목의 세수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건

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 ‘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세입예산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으며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측보다 위반 통보건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동 항목은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는 어렵다 하겠음.

[표]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 |
|--|
| ① '14~'17년도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평균 부과 건수 97건 × 250천원 = 24,250천원 |
| ②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최소부과 건수 1건 × 10,000천원 = 10,000천원 |
| ① + ② = 34,250천원 |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기타사용료’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교육비 그리고 주차요금수입이 해당되며 세입예산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표] 기타사용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 |
|--------------------------------|
| ① 별관 + 본관 공유재산 사용료 = 12,809천원 |
| ②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수강료 = 25,983천원 |
| ③ 부설주차장 수입 = 7,258천원 |
| ① + ② + ③ = 46,050천원 |

- 동 항목의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주요인은 주차요금수입이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어 있

였으나 결산 시에는 주차요금수입 항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징수결정 되었기 때문임.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8]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주차장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장 수입은 ‘주차요금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품질시험소 주차수입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세입편성이나 결산 시에 ‘기타사용료’로 편성·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지적 사항은 금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년간 지속돼 이에 대해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정노력이 부족했거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서 발생한 것이라 여겨짐.
- 따라서 향후 담당부서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차요금수입에 대한 예산 및 결산 과목을 통일시키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차요금수입’,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은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항목으로
- ‘주차요금수입의 경우,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25면) 주

차요금 수입이며,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유는 위 ‘기타용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 ‘불용품매각대’는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재검정 및 하수가스 채취용으로 사용하던 관용차량([표] 참조)을 매각한 것으로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 매각계획 없이 서울시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에 따른 대폐차처리에 따른 것인데, 향후에는 관용차량을 매각할 경우 내구연한 경과와 함께 미리 매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표] 차량 매각현황

(단위: 천원)

차명	차량번호	차종/형식	최초등록일	매각가액
스타렉스	80오 4152	중형화물/A1-K6MSS3GJ LAR5-1	2005.3.3	2,000

- ‘그 외수입’ 항목에서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사유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수도미터 검사를 의뢰해 음에 따라 발생한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등 예측이 어려운 항목들의 세입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표] 세부내역 참조)

참고로, 그동안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세입 편성은 서울시 전

체 세입 예산중 기타수수료에 포함·편성되었기 때문에 품질 시험소 세입예산 편성에서 제외해왔고 결산 시에는 품질시험소에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해왔음.

이 또한 주차요금수입과 마찬가지로 세입편성 항목과 결산 항목이 달라 회계처리의 일관성이 없었으나, 2019회계연도 세입 편성부터 품질시험소 자체 ‘그 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그 외 수입 실제 수납액 세부 내역

(단위: 만원)

항 목	예산액(a)	실제 수납액(b)	비 고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	240	
일반전화해지 환급금	-	387	
장비지원에 따른 손료	-	160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	42	
유류포인트 적립금 및 도시가스 환급금	-	12	
임대료 공제회비 (건물화재 보험료)	-	9	
합 계	-	850	

다) 미수납액(결산서 p.14~15)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총액은 91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과태료 미수납액 504만원,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413만원이며 과태료 미수납액은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서

파산회생 진행 2개사 402만원, 재정악화 미납분 체납독촉 진행 102만원임.

-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은 폐업과 부도 등으로 인한 과년도 체납분으로 38세금징수과와 공동으로 총 6건 413만원에 대해 체납정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초기 체납은 자칫 장기체납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의 일반회계 미수납총액은 28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미수납액 204만원, 계량기제조업 등록사항 변경 미이행 과태료 미수납금인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76만원인데,

- 기타수입의 미수납액은 노후 관용차량 매각금액 200만원과 동차량의 자동차보험 해지 후 돌려받은 해지 환수금 4만원을 행정오류로 세입조치 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동 미수납액은 2019. 4. 12일 입금 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안의 미수납 발생금액이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나 동 사례처럼 행정오류로 미수납금이 발생한 것은 행정미숙에서 오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683,882	5,300	-	-	-	-	689,182	627,388	-	61,794 (8.9%)
2017	902,688	-	-	-	-	-	902,688	769,971	5,300	127,417 (14.1%)
2016	652,397	-	-	-	-	-	652,397	580,340	-	72,057 (11.0%)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0만원과 예산액 6억 8,388만원을 합한 6억 8,918만원으로 이 중 91%인 6억 2,739만원을 지출하고 8.9%인 6,17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0)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억 8,918만원 대비 8.9%인 6,17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최근 3년간 불용율 추이를 살펴보면(11.0%→14.1%→8.9%) 지난 해 대비 불용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86,388	52,625	13.6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8,230	157	0.3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310	749	4.9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5,000	6,738	7.1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사업	14,850	380	2.6
6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전면 개정 용역	5,300	0	0.0
7	기본경비	124,104	1,145	9.5
	합 계	689,182	61,794	8.9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 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638만원 중 3억 3,376만원을 지출하고 13.6%인 5,262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불용의 주 사유는 2017년 7월 대형공사 입찰계획 수요조사 시 강동구청에서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기본설계적격심의 예정일을 2018년 11월로 제출함에 따라 심의 예산을 편성(4,300만원)하였으나, 발주부서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당해연도 설계적격심의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 차년도 심의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에 어려운 측면은 인정되나,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500만원 중 8,826만원을 지출하고 7.1%인 67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금회에는 총 24건의 사업에 9,296만원을 배정해 8,826만원을 지출하여 4억 2,250만원의 사업시행효과를 얻었는데([표] 참조) 동 사업은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므로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표]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의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배정액	집행액	사업 시행효과	해당 사업명
계		92,955	88,262	422,502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6,055	5,860	6,677	남산골한옥마을 관람환경 개선공사
2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1,487	11,434	136,789	도림천고가 보수공사 등 3건
3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	19,832	18,589	56,450	호안녹지 유지관리사업 등 3건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19,381	18,030	67,564	잠실주경기장 1~3층 복도 바닥 방수 및 보수공사 등 2건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소)	19,548	17,697	90,238	목동야구장 천정 석면철거 및 교체 설치공사 등 4건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1,810	1,810	5,489	월드컵로 주변 녹지대 정비공사
7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14,842	14,842	59,295	서울시립대학교 방수 및 쿨루프공사 등 10건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18	1,385,919			13,200			1,385,919	1,270,964	12,430	102,525 (7.4%)
2017	1,881,678	276,217					2,157,895	2,009,810	45,396	102,688 (6.9%)
2016	2,450,633	224,240					2,674,873	2,176,217	276,217	222,439 (8.3%)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예산액 13억 8,592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1,243만원이고, 예산변경은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320만원을 변경사용 하였으며 예산대비 지출액은 91.7%인 12억 7,100만원이고 7.4%인 1억 253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1)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1억 253만원으로 전년(6.9%)에 비해 불용율이 다소 상승하였음.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6억 5,692만원 대비 9.0%인 5,95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3,059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373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 7개 항목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520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656,923	59,528	9.0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56,950	18,147	11.5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165,257	3,955	2.3
4	기본경비	406,789	20,895	5.1
	합 계	1,385,919	102,525	7.4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의 경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1억 5,695만원 대비 11.5%인 1,8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유는 낙찰차액 285만원, 집행잔액 1,530만원인데 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장비구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679만원 대비 5.1%인 2,0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금회 불용의 주된 사유는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연구센터 업무가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항목에서 1,363만원의 불용이 발생됨에 기인한 것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의 변경

- 품질시험소의 금회 예산변경 사용은 한국인정기구(KOLAS¹⁾)의 공인 시험·교정기관 전환계획에 따라 공인시험기관 경영시스템 개정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나 전환계획이 18.10.12일에 공고²⁾되어 당해예산이 미확보 됨에 따라 동일세부 사업인 ‘건설자재품질시험’의 전산개발비 1,3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인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전환계획이 예산편성 후 공고되어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국가기술표준원의 전환계획이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사안이 아님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전 전환계획에 대해 동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전환계획의 정보를 얻었다면 당해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음에는 아쉬움이 있음.

1)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의 정부기구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및 시험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2)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0267호(2018.10.12.)

▶ 전환대상 : KOLAS 시험·교정기관

▶ 전환평가일정 : 2019.4.1.~2020.9.30

- 적용표준 : KS Q ISO/IEC 17025:2006 → KS Q ISO/IEC 17025:2017

▶ 전환 미 이행기관 : 공인기관 지위 상실

※서울시 품질시험소 인정유효기간 : 15.12.1 ~ 19.11.30 → 기간 만료 7개월 전에 갱신평가 서류 신청

[표] 예산변경 사용 내역

예산과목					예산 편성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일반회계)	건설자재 품질시험	일반 운영비	전산개발비 (207-02)	301,385	-	13,200	288,185
				사무관리비 (201-01)	97,240	13,200	-	110,440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다음연도 사고이월(결산서 p.57)

- 2018회계연도 품질시험소의 사고이월은 'KOLAS 공인시험기관 경영시스템 개정용역' 사업이 '18.12월 발주되어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기간 부족으로 1건 1,243만원을 이월하였음.